

대법원 2002. 4. 26 선고 2001다8150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참 조 조 문

[1] 민법 제105조, 제563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2. 4. 26 선고 2001다81504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1. 11. 13 선고 2001나2343 판결

전 문

【원고(선정당사자),상고인】 안AA

【피고,피상고인】 BA산업개발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B 담당변호사 성CA 외 6인)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200 1. 11. 13. 선고 2001나2343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의 부담으로 한다.

이유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, 이 사건 '자'○○동 00-0세대를 최초 분양받은 안남불은 1978. 12. 1. 소외 동DA개발 주식회사(후에 KK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, 이하 '피고'라 한다)와 사이에 이 사건 '자'○○동 00-0세대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'자'동 수분양자들에게 전매한 사실, 그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전매로 인한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, 피고는 안남불이 이 사건 '자'○○동 00-0세대를 '자'동 수분양자들에게 전매하자, 안남불과의 분양계약서 및 안남불과 '자'동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서를 모두 회수한 다음 피고와 '자'동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'자'동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안남불, '자'동 수분양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안남불은 분양계약에서 탈퇴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상실하고, '자'동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인수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안남불이 '자'○○동 00-0세대에 관한 최초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, 또 전매로 인한 세금을 추징 당하였다 하여 피고가 안남불의 분양계약서를 회수하고 '자'동 수분양자들과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,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로서는 여전히 '자'동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누락된 대지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안남불이 안양시 ○○구 ○○○○동 00-0의 20 대지(이하 '709의 20 대지'라 한다)를 증여의 형식을 빌어 양도한 이상 '자'동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안남불의 상속인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,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중간생략등기,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, 기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(다만, 원고가 안남불과 '자'동 수분양자 사이의 위 709의 20 대지에 관한 지분양도시에 별도의 약정을 한 바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어떤 청구를 하는 것은 별 문제일 수 있어 보인다).

그리고 원고가 적시한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송진훈(재판장) 변재승 윤재식(주심) 이규홍